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446

제출연월일 : 2023. 6. 1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구의회 자치법규(조례)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약칭 규정 정비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변경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정식 명칭·근거규정 삽입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사항에서 삭제(안 제2조)
 - 1) 위원회 →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
 - 2) 교통안전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→ 「대구 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나. 위촉직 위원 임기 3년 → 2년(안 제4조)

- 1)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 및 「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」 제107제3항 준용 규정(임기 2년) 합치
- 다. 위원회 간사·서기 교통안전팀장 및 담당직원 규정 → 위원장 지명(안 제7조제2항)
 - 1) 팀은 「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조직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에서 삭제
- 라. 위원장 전문위원 회의 출석 요구권 추가 (안 제8조제3항)
 - 1)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6조 규정(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)과 일치
- 마. 기타 띄어쓰기 및 체계자구 정비
- 3. 개정조례안: 붙임
- 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. 참고사항
 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 - 2)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 - 3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
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'23. 5. 1. ~ 5. 22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5) 비용추계서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조례는「교통안전법」제13조"를 "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"로, "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"를 "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회"를 "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"구성한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"자"를 각각 "사람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3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"를 "작성·보관한다"로 한다. 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자중"을 "사람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"를 "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「교통안전</u> | 제1조(목적) <u>조례는 「교통안</u> |
| <u>법」제13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| 전법」 제13조 |
|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| |
|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|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 |
| <u>"위원회"라 한다)의</u> 운영에 관 | <u>성 및</u> |
|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| |
| 목적으로 한다. | |
| 제2조(기능) <u>위원회</u> 는 다음 각 호 | 제2조(기능) <u>대구광역시 서구 교</u> |
| 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| 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|
| | <u> "위원회"라 한다)</u>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교통안전 기본계획・시행계 | 2. 「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|
| 획 수립에 관한 사항 | 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|
| |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 |
| | 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|
| | <u>관한 사항</u> |
|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| 제3조(구성) ① |
|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 | |
| 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 . | <u>성별을 고</u> |
| | <u>려하여 구성한다</u> . |
|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| 2 |
| 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| |
|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 | |
| 구(이하"구"라 한다) 도시안전 | |

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<u>자</u>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<u>3년</u>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 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

-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 무 팀장이 되고, 서기는 교통안 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.
- ③ (생 략)
-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, 위 원회의 회의록을 <u>작성·보관하</u> 여야 한다.

제8조(전문위원) ① (생 략)

-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중</u>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전문위원은 <u>위원회가 요구하</u> 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| <u>사람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1. ~ 8. (현행과 같음) |
| 9 |
| 사람 |
| 제4조(임기) |
| <u>2년</u> |
| |
| 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|
| 같음) |
| 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 |
| 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 |
|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 |
| 다. |
| <u></u> ③ (현행과 같음) |
| 4) |
| |
| <u>작성·보관한</u> |
| <u>다</u> . |
| 제8조(전문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|
| <u>사람 중</u> |
| |
| ③ 위원회 또는 위원 |
| <u>장이 요구할 때</u> |
| |

관계 법령

교통안전법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43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12. 6. 1.>

- ②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 <개정 2012. 6. 1.>
- ③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 6. 1.>

교통안전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1. 27.] [대통령령 제32376호, 2022. 1. 28., 일부개정]

제6조(전문위원)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0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(이하 "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"라 한다)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0. 1. 7., 2018. 4. 24.〉

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1. 7.〉

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1. 8. 19., 2012. 9. 7., 2018. 4. 24.>

② <u>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</u> 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 조를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2. 9. 7., 2018. 4. 24.>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

[시행 2022. 12. 1.] [법률 제18522호, 2021. 11. 30., 타법개정]

제107조(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 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. 6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 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조정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정 등으로 예상 되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교통과장 이상학